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83
----------	-----

발의연월일 : 2007. 7. 9.

발 의 자 : 김인식의원외 13인

1. 제정이유

대전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완공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편의시설에 대한 설계자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
- 나. 편의시설 설치검사, 사전검사 대상, 검사시기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내지 제6조).
- 다. 사전검사요원의 구성, 수당, 직무, 의무 및 제척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 내지 제10조).
- 라. 관계공무원·건축물 시설주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1조 내지 제12조).
- 마. 사전검사 보고서의 작성과 보고, 결과의 반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3조 내지 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나. 합 의 :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완공 전에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전검사”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시설주관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관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사요원이 직접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편의시설 설계도면 사전검사) ①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편의시설 관련 기관 가운데 2곳 이상의 기관을 선정하여 편의시설 자문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대상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리모델링, 리노베이션 등의 허가에 있어 허가 이전에 반드시 제1항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검사하여야 한다.

제4조(편의시설 설치검사)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편의시설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검사요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사전검사 대상) ①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로 한다. 다만,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전검사를 받아야하며, 민간시설에 대한 검사대상은 별도의 규칙으로 그 범위를 정한다.

②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시기 및 방법) ①이 조례에 의한 사전검사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검사를 할 때에는 사전검사요원(이하 “검사요원” 이라 한다) 3인 이상으로 한다.

제7조(사전검사요원의 구성) ①이 조례에 의한 사전검사를 위하여 시설주관기관에 검사요원을 둔다.

②검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시설주관기관의 장이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장애인 편의시설 업무 담당 공무원
2.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시설 보장이 필요한 자
4. 편의시설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에 있는 자
5.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자

③위촉 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촉 검사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요원의 직무) ①검사요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검사를 위한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검사요원은 시설주관기관의 장이 정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요원은 검사결과를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요원의 의무 및 제척) ①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검사요원은 사전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검사요원은 본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해당시설에 대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관계공무원의 의무) ①관계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검사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관계공무원은 편의시설 사전검사 시 이를 검사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에 규정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 사전검사를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건축물 시설주의 의무) ①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시설주는 시설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사전검사 보고서의 작성과 보고) ①검사요원은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사전검사 결과의 반영) ①해당부서에서는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검사요원 일부 또는 전체 검사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예산의 확보)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편의시설 설치 및 그에 관한 연구와 교육, 홍보, 사전검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조례 시행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 련 법 령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제7조, 제15조, 제22조, 제23조

第7條 (對象施設) 便宜施設을 設置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對象施設"이라 한다)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5.1.27>
2. 公園
3. 公共建物 및 公衆利用施設
4. 共同住宅
5. 삭제 <2005.1.27>
6. 通信施設
7. 기타 障碍人등의 편의를 위하여 便宜施設의 設置가 필요한 建物·施設 및 그 附帶施設

第15條 (적용의 緩和) ①施設主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第8條第2

項의 細部基準에 적합한 便宜施設의 設置가 곤란하거나 不合理한 경우에는 세부 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施設主管機關의 승인을 얻어 이에 따라 便宜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1. 細部基準에 적합한 便宜施設의 設置가 構造的으로 곤란한 경우
2. 細部基準에 적합하게 便宜施設을 設置할 경우 安全管理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對象施設의 用途 및 周邊與件에 비추어 細部基準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우

②施設主管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障礙人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의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2條 (資料提出 요구 및 檢査) ①保健福祉部長官과 施設主管機關은 施設主에게 便宜施設의 設置 및 운영에 관련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便宜施設設置 및 設置된 便宜施設의 細部基準에의 적합성 여부에 관하여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23條 (是正命令등) ①施設主管機關은 對象施設이 이 法の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施設主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法에 적합하도록 便宜施設의 設置 및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保健福祉部長官은 施設主管機關에게 소관 對象施設에 대한 便宜施設의 設置

및 개선등 是正措置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施設主管機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제7조 (적용의 완화) ①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12>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재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설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적용의 완화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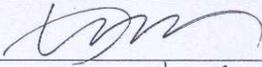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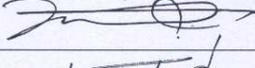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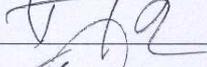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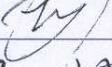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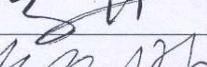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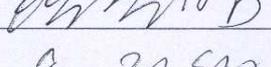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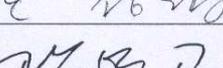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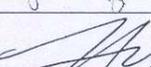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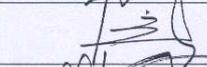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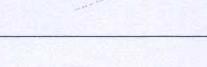
④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노인·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2>

【건축법】 제8조

第8條 (建築許可) ①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1.8>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찬 성 의 원 서 명

의원명	서명	비고
김인석		
김태훈		
박희권		
이성희		
김영민		
오영세		
박수범		
오정성		
곽영교		
송재홍		
김명환		
김삼웅		
이상태		
권형래		

심 사 보 고 서

2007. 7. 19

교육사회위원회

I.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7. 7. 9 김인식의원외 13인

나. 회 부 일 자 : 2007. 7. 9.

다. 상 정 일 자 : 제1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7. 7. 11)
상정, 질의, 심사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2007. 7. 19)
상정, 질의, 심사, 수정의결

II.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인식의원)

1. 제안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완공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편의시설에 대한 설계도면 사전검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
- 나. 편의시설 설치검사, 사전검사 대상, 검사시기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내지 제6조).
- 다. 사전검사요원의 구성, 수당, 직무, 의무 및 제척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 내지 제10조).
- 라. 관계공무원과 건축물 시설주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1조 내지 제12조).
- 마. 사전검사 보고서의 작성, 보고, 결과의 반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3조 내지 제14조).
- 바. 예산의 확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5조).

Ⅲ. 검토의견 (전문위원 : 안문환)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의무가 강화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사용자 중심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필요성이 확대되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완공 전에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여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제정 내용은

- 총 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
- 제3조와 제4조는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검사 해야 하며, 2곳 이상의 편의시설자문기관의 지정, 사전검사요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 제5조는 사전검사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고,
- 제6조는 사전검사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하고, 검사요원은 3인 이상으로 하도록 함.
- 제7조와 8조는 검사요원을 15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 제9조와 10조는 검사요원은 편의시설 사전검사를 위해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을 하며, 검사결과를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 및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 제11조와 제12조는 시설주에게 사전검사의 취지통보, 연간 계획수립 등의 관계공무원의 의무와 사전검사 시 현장안내 및 사전검사결과 내용의 반영 후 결과보고 등 시설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 제13조는 3일 이내 사전검사 결과보고서의 제출과 결과보고서 작성이 어려울 시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제14조는 사전검사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반영토록하고, 필요시 검사요원 및 관계기관·전문가 등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제15조는 편의시설 설치 및 연구와 교육, 홍보, 사전검사를 위한 예산확보와 시행에 관해 규정함.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급변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장애인·노인 등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완공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 및 정보 접근 증진을 위해 시의 적절하고 바람직한 조례라고 사료되나,

본 조례안의 시행과 사전검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는 건축허가 민원처리 시의 민원발생이나, 시행규칙 제정 시 민간 시설에 대한 사전검사 대상 건축물의 선정기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불편이나 행정력의 낭비,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IV. **질 의 요 지** : 생 략

V.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V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83
----------	-----

제안연월일 : 2007. 7. 19.

제안자 : 교육사회위원장

1. 수정이유

조례안 인용법명의 띄어쓰기와 사전검사요원의 구성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검사 요원의 용어를 사전검사요원으로 통일함.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로 수정함(안 제1조 내지 제2조).
- 나. 자문기관 지정사항을 삭제하고 설계도면 사전검사자를 변경 지정함(안제3조).
- 다. 편의시설 사전검사의 근거법령을 수정함((안 제4조).
- 라.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법에서 정한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것으로 함(안 제5조).
- 마. 검사시기 및 방법에 관계공무원 및 사전검사 결과보고, 기간연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6조).
- 바. 사전검사요원의 구성을 정비하고 사전검사요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안 제7조).
- 사. 수당 및 여비 지급 강제규정을 “할 수 있다”의 임의규정으로 수정(안 제8조).
- 아. 사전검사요원의 직무를 삭제하고 의무 및 제척에 관한 자구를 수정함(안 제9조).
- 자. 시설주관기관의 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안 제11조).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중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적절한 검사”를 “사전 검사”로 하고

안 제2조중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로, “편의시설 및 설비(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시설주관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관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를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공무원 및”으로 하며

안 제3조중

원안 제3조를 삭제한 후 “제3조(편의시설 설계도면 사전검사)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공무원 및 사전검사요원으로 하여금 사전검사 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4조중

“설치검사”를 “설치 사전검사”로,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전에”로, “공무원 및”을 삽입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를 “사전검사 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5조중

단서규정을 삭제한다.

안 제6조 제1항중

“검사시기”를 “사전검사시기”로, “이 조례에 의한 사전검사는”을 “사전검사는”으로 하고

안 제6조 제2항중

“사전검사요원(이하 “검사요원”이라 한다)3인 이상으로 한다.”를 “관계공무원 1인과 사전검사요원 3인 이상이 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6조 제3항

“사전검사요원은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검사에 참여한 사전검사요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안 제6조 제4항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안 제7조중

원안 제7조를 삭제한 후 “제7조(사전검사요원의 구성) ①시설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전검사요원을 15인 이내로 위촉한다.

1.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자
2. 편의시설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에 있는 자
3.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

②사전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8조중

“위촉 검사요원에게는”을 “사전검사요원에게는”으로 하고, “지급하여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9조중

원안 제9조를 삭제하고, 원안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검사요원”을 “사전검사요원”으로 하고, 제3항의 중 “경우에 그 해당시설에 대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참여할 수 없다.”를 “때에는 그 해당시설의 사전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로 하며

안 제10조

“제10조(사전검사요원의 교육) 사전검사요원은 시설주관기관의 장이 정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안 제11조 제1항중

“관계공무원은”을 “시설주관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안 제11조 제2항 제3항을 삭제하고

제2항으로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안 제11조 제3항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사전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전검사요원 일부 또는 전체 사전검사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안 제11조 제4항

“시설주관의 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 사전검사를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원안 제13조와 제14조를 삭제하고,

원안 “제15조(예산의 확보)”를 “제13조(예산의 확보)”로 한다.

원안 “제16조”를 “제14조”로 한다.

부칙 중 “시행후”를 “시행 후”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완공 전에 <u>적절한</u> 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u>」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완공 전에 <u>사전검사</u>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전검사”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u>편의시설 및 설비</u>(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시설주관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관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사요인이 직접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전검사”라 함은 「<u>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u>적합성 여부</u>를 공무원 및 사전검사요원이 직접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p>
<p>제3조(편의시설 설계도면 사전검사) ①시설주관기관의 장은 편의시설 관련 기관 가운데 2곳 이상의 기관을 선정하여 편의시설 자문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p> <p>②시설주관기관의 장은 대상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리모델링, 리노베이션 등의 허가에 있어 허가 이전에 반드시 제1항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검사하여야 한다.</p>	<p>제3조(편의시설 설계도면 사전검사)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공무원 및 사전검사요원으로 하여금 사전검사 하여야 한다.</p>

원 안	수 정 안
<p>제4조(편의시설 설치검사)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편의시설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검사요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제4조(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공무원 및 사전검사요원으로 하여금 사전검사 하여야 한다.</p>
<p>제5조(사전검사 대상) ①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로 한다. 다만,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전검사를 받아야하며, 민간시설에 대한 검사대상은 별도의 규칙으로 그 범위를 정한다.</p>	<p>제5조(사전검사 대상) ①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로 한다.(단서규정 삭제)</p>
<p>②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제6조(검사시기 및 방법) ①이 조례에 의한 사전검사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검사를 할 때에는 사전검사요원(이하 “검사요원” 이라 한다) 3인 이상으로 한다.</p>	<p>제6조(사전검사시기 및 방법) ①사전검사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검사를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1인과 사전검사요원 3인이상이 하여야 한다.</p>
	<p>③사전검사요원은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검사에 참여한 사전검사요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원안 제13조 1항 내용) ④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원안 제13조 2항 내용)</p>

원 안	수 정 안
<p>제7조(사전검사요원의 구성) ①이 조례에 의한 사전검사를 위하여 시설 주관기관에 검사요원을 둔다.</p> <p>②검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시설주관 기관의 장이 15인 이내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 편의시설 업무 담당 공무원 2.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시설 보장이 필요한 자 4. 편의시설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자 5.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자 <p>③위촉 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제7조(사전검사요원의 구성) ①시설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전검사요원을 15인 이내로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자 2. 편의시설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에 있는 자 3.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 <p>②사전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제8조(수당 등) 위촉 검사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p>	<p>제8조(수당 등) 사전검사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9조(검사요원의 직무) ①검사요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검사를 위한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한다.</p> <p>②검사요원은 시설주관기관의 장이 정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요원은 검사 결과를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p>	<p>(삭제)</p>

원 안	수 정 안
<p>제10조(검사요원의 의무 및 제척) ①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p> <p>②검사요원은 사전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p> <p>③검사요원은 본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해당시설에 대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참여할 수 없다.</p>	<p>제9조(사전검사요원의 의무 및 제척) ①사전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p> <p>②사전검사요원은 사전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p> <p>③사전검사요원은 본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시설의 사전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p>
<p>제11조(관계공무원의 의무) ①관계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검사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p> <p>②관계공무원은 편의시설 사전검사 시 이를 검사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법에 규정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 사전검사를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제10조(사전검사요원의 교육) 사전검사요원은 시설주관기관의 장이 정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원안 제9조 2항 내용)</p> <p>제11조(시설주관기관의 장의 책무) ①시설주관기관의 장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검사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p> <p>②시설주관기관의 장은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원안 제14조 1항 내용)</p>
	<p>③시설주관기관의 장은 사전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전검사요원 일부 또는 전체 사전검사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원안 제14조 2항 내용)</p> <p>④시설주관의 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 사전검사를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원안 제11조 3항 내용)</p>

원 안	수 정 안
<p>제12조(건축물 시설주의 의무) ①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②시설주는 시설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제12조(건축물 시설주의 의무) ①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②시설주는 시설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제13조(사전검사 보고서의 작성과 보고)</p> <p>①검사요원은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삭제)</p>
<p>제14조(사전검사 결과의 반영) ①해당부서에서는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검사요원 일부 또는 전체 검사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삭제)</p>

원 안	수 정 안
<p>제15조(예산의 확보)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편의시설 설치 및 그에 관한 연구와 교육, 홍보, 사전검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p>	<p>제13조(예산의 확보)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편의시설 설치 및 그에 관한 연구와 교육, 홍보, 사전검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p>
<p>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조례 시행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